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2020. 10.



목차

- I. 협동조합 회계 개요
- II. 협동조합 예산
- III. 협동조합 수입 및 지출
- IV. 협동조합 결산
- V. 협동조합 세무
- VI. 자주하는 질문

I. 협동조합 회계 개요

- 협동조합(영리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과 관련한 회계기준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주식회사)과 달리 통일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영리법인의 소관 주무부처가 감독의 목적 및 업종(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시) 사회적협동조합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으로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특정사업 및 특정자금의 보유로 인한 운영,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로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 협동조합기본법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II. 협동조합 예산

1. 예산일반

- 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예산은 통상적으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 확정되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개별 법령에 따라 관할 감독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을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기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후에 보고 해야 합니다.

예산 프로세스 흐름도



협동조합기본법

- ❖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Ⅲ. 협동조합 수입 및 지출

1. 수입 및 지출 일반(1)

-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하여 조합원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기업보다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입 및 지출 시 지켜야할 사항

-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격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 거래 전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확인한 후에 결재 승인하여야 합니다.
- 모든 거래는 통장거래가 원칙입니다.
-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결제 지급일은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 증빙
수입	출자금	조합원가입원서 및 통장입금기록
	조합(운영)비	조합원관리대장 및 통장입금기록
	기부금	기부약정서 및 입금기록
	매출대금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통장입금기록
지출	'개인'에게 지급	계약서, 상대방의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송금증(통장출금기록), 신고된 지급명세서
	'사업자'에게 지급	계약서, 상대방의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송금증(통장출금기록),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Ⅲ. 협동조합 수입 및 지출

1. 수입 및 지출 일반(2)

통장관리

- 협동조합의 모든 수익 및 비용은 통장으로 관리합니다.
- 자금관리를 위하여 협동조합 명의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 통장의 예입액과 인출액은 당일의 수입액 및 지출액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통장은 그 용도에 따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회계처리에 용이합니다.

- **통장관리 예시**
 - ① 사업관련 통장1 : 주사업 매출 및 매입관련 통장
 - ② 사업관련 통장2 : 주사업 이외 사업관련 매출 및 매입 관련 통장
 - ③ 일반관리비 등 통장 : 사업이행에 필요한 지출 등 관련 통장
 - ④ 특수 용도의 통장 : 부가가치세, 퇴직금, 예수금, 잡수입 등 관련 통장

Ⅲ. 협동조합 수입 및 지출

2. 수입 및 지출 서식 예시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예시

수입 제2019-05-001호

결재		
회계담당자	상임이사	이사장
도장		

수입결의서

수입결의일자: 2019.00.00

금: 500,000 원정

상기 금액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수입내역

수입처	내역	금액	비고
ㅇㅇ중학교	사회적경제교육 감사비	500,000	
계		500,000	

붙임:

사회적협동조합 ㅇㅇㅇㅇ

지출증 제2019-00-001호

결재		
회계담당자	상임이사	이사장
도장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일자: 2019.00.00

금: 500,000 원정

상기 금액을 지출결의함

지출내역

지출과목	내역	금액	비고
홍보비	기타홍보비	500,000	
	웹포스팅 홍보비		
계		500,000	

붙임: 영수증 ㅇㅇ부

사회적협동조합 ㅇㅇㅇㅇ

Ⅲ. 협동조합 수입 및 지출

3. 수입내역서 작성예시(1)

2019년 9월 일자별 재정결산 (수입)							
수입일자	항목 1	항목 2	세부내용	입금액	입금처	입금증빙	관련통장
2019-09-02	기타사업	학교지원사업	노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3,300,000	노변중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하늘지역 아동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000,000	하늘지역아동센터(대구서부지부)	계산서	138
2019-09-03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메이커미래공방보조강사비	1,328,000	국민권주아	현금영수증	138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274,000	CM S입금		우체국
2019-09-0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시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4,920,000	시지중학교	계산서	138
2019-09-09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238,000	대평고등학교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황금중 3D 펜 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20,000	황금중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90,000	주식회사 커스프	계산서	138
2019-09-11	기타사업	일자리지원금	일자리지원금	260,000	일자리지원금		735-6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46,195	S C 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2019-09-16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68,559	S C 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2019-09-17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달서공고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경주중 진			계산서	138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우체국
2019-09-19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지역특화			계산서	138
2019-09-2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대구-광주			계산서	138
2019-09-21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대구-광주			계산서	138
2019-09-25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우리마을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대원고 리			계산서	138
2019-09-26	기타사업	조합비					우체국
2019-09-27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영남대 이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전통문화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호산고 리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지역특화			계산서	138
	기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일자리창				411
	기타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				411
2019-09-29	기타사업	예금이자	**0			법인	138
2019-09-3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북중 진로			계산서	138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경운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2,556,000	경운중학교	계산서	138
				45,604,370			

작성요령

Step1. 수입일자
반드시 수입일자 순서대로 입금내역을 기록하기

Step2. 항목1
입금일자별로 크게 주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기
- 작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은 정관상 주사업과 기타사업을 확인

Step3. 항목2
각 주사업 및 기타사업에서 수입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

Ⅲ. 협동조합 수입 및 지출

3. 수입내역서 작성예시(2)

2019년 9월 일자별 재정결산 (수입)							
수입일자	항목 1	항목 2	세부내용	입금액	입금처	입금증빙	관련통장
2019-09-02	기타사업	학교지원사업	노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3,300,000	노변중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하늘지역 아동센터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000,000	하늘지역아동센터(대구서부지부)	계산서	138
2019-09-03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메이커미래공방보조강사비	1,328,000	국민권주아	현금영수증	138
	기타사업	조합비	CM S입금	274,000	CM S입금		우체국
2019-09-0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	시지중 진로캠프 프로그램 진행비	4,920,000	시지중학교	계산서	138
2019-09-09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238,000	대평고등학교	계산서	138
	기타사업	학교지원사업	황금중 3D 펜 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220,000	황금중학교	계산서	138
		교육서비스	보드게임 판매	90,000	주식회사 커스프	계산서	138
				260,000	일자리지원금		735-6
				46,195	S C 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68,559	S C 스마트스토어정산	카드	138
				360,000	대구달서공업	계산서	138
				996,000	경주중학교(학)	계산서	138
				140,000	CM S입금		우체국
				100,000	신한이수현	계산서	138
				547,200	국민이구연	계산서	138
				547,200	손다진	계산서	138
				1,000,000	농협(사)공동체디자인	계산서	138
				1,425,000	대원고등학교	계산서	138
				3,118,000	CM S입금		우체국
				4,900,000	영남대학교산학협	계산서	138
				3,499,380	신한(사)한국문화공	계산서	138
				288,000	호산고등학교	계산서	138
				100,000	국민이구연	계산서	138
				11,863,960	경제과		411
				335,260	경제과		411
				3,616	**이자 3,616 법인세 0 법인		138
				1,080,000	대구북중학교	계산서	138
				2,556,000	경운중학교	계산서	138
				45,604,370			

작성요령

Step4. 세부내용

- 입금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
- 각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인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가장 기초가 됨

step5. 입금액

-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재

Step6. 입금처

-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기입
-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입금된 경우에는 '소비자'로 통일하여 기입

Step7. 입금증빙

- 세법에서 정한 증빙서류가 발행된 경우 반드시 기재
- 그 외 증빙자료는 생략해도 무방함
- *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Step8. 관련통장

- 입금된 사회적협동조합 통장 끝 세자리를 기록

Ⅲ. 협동조합 수입 및 지출

4. 지출내역서 작성예시(3)

2019년 9월 일자별 재정결산 (지출)								
지출일자	항목 1	항목 2	항목3	세부내용	지출금액	지출처	관련증빙	관련통장
2019-09-02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판매	8,000	우정사업본부(우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안동 진로체험 출장직원 식대	42,000	빠나루감자탕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665,000	주식회사 늘푸르	신용카드	940
2019-09-03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시지중 출장 직원 식대	48,240	시지중급식비	전자세금계산서	94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소모품비	팬텀 3 중고 구매	305,000	팬텀 3	인터넷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구매	5,000	우정사업본부(우	신용카드	940
2019-09-04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구매	130,000	국민박덕순	세금계산서	940
	공통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72,000	이동근선산급창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창직 수업 보드게임 교구 구매	25,000	(주)아인교육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창직 수업 보드게임 교구 구매	25,000	(주)아인교육	체크카드	940
	공통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40,297	대성산업(주)구마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소모품비	충전용 허브 어댑터 구입	97,000	(주)네이버	신용카드	940
	공통비	사무용품비		노트북 부품 어댑터 구입	8,500	쿠팡 주식회사	신용카드	940
2019-09-05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시지중 학생 간식비	28,000	러스트핑크	신용카드	94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6,500	고봉민김밥상인점	신용카드	940
	공통비	임차료, 관리비		청소비	50,000	더바인영어(박혜	간이영수증	735-6
	공통비	복리후생비		추석 명절 접대비	303,760	쿠팡 주식회사	신용카드	940
	공통비	CM S 수수료		CM S 수수료	7,040	CM S		우체국
2019-09-06	공통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40,000	엘지주유소	신용카드	940
2019-09-07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직원 간식	66,340	G S25유가사네거리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직원 간식				
2019-09-08	공통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2019-09-09	공통비	생활용품비		쓰레기				
	공통비	우편발송비		보드게임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학교지원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학교지원				
2019-09-1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보험료	4대보험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인건비	8월 급여	1,649,870	국민은행	급여대장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인건비	8월 급여	1,699,870	국민권주아	급여대장	735-6
					10,328,207			

작성요령

수입내역서와 거의 유사하나 **항목3**이 추가 됨

- 여러 지출내용을 동일한 항목으로 묶을 필요가 있고,
- 향후 지출내역서를 통해 결산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기 때문임

* 개별 지출에 대해선 각 협동조합이 각자의 공통분모로 항목을 설정

Ⅲ. 협동조합 수입 및 지출

4. 지출내역서 작성예시(4)

2019년 9월 일자별 재정결산 (지출)								
지출일자	항목 1	항목 2	항목3	세부내용	지출금액	지출처	관련증빙	관련통장
2019-09-02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판매	8,000	우정사업본부(우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안동 진로체험 출장직원 식대	42,000	빠나루감자탕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665,000	주식회사 늘푸르	신용카드	940
2019-09-03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시지중 출장 직원 식대	48,240	시지중급식비	전자세금계산서	94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소모품비	팬텀 3 중고 구매	305,000	팬텀 3	인터넷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구매	5,000	우정사업본부(우	신용카드	940
2019-09-04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보드게임 구매	130,000	국민박덕순	세금계산서	940
	공통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72,000	이동근선산급창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창직 수업 보드게임 교구 구매	25,000	(주)아인교육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상품	창직 수업 보드게임 교구 구매	25,000	(주)아인교육	체크카드	940
	공통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40,297	대성산업(주)구마	신용카드	940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소모품비	충전용 허브 어댑터 구입	97,000	(주)네이버	신용카드	940
	공통비	사무용품비		노트북 부품 어댑터 구입	8,500	쿠팡 주식회사	신용카드	940
2019-09-05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복리후생비	시지중 학생 간식비	28,000	러스트핑크	신용카드	940
	기타사업	교육서비스	복리후생비	직원 식대	6,500	고봉민김밥상인점	신용카드	940
	공통비	임차료, 관리비		청소비	50,000	더바인영어(박혜	간이영수증	735-6
	공통비	복리후생비		추석 명절 접대비	303,760	쿠팡 주식회사	신용카드	940
	공통비	CM S 수수료		CM S 수수료	7,040	CM S		우체국
2019-09-06	공통비	차량유지비		주유비	40,000	엘지주유소	신용카드	940
2019-09-07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직원 간식비	66,340	G S25 유가사네거리	신용카드	940
					3,500	G S25 유가사네거리	신용카드	940
20					49,450	(주)지원네트웍스	신용카드	940
20					5,800	씨유대구상인드림	현금영수증	940
					4,000	우정사업본부(우	신용카드	940
					93,000	대장부	신용카드	940
						롯데쇼핑(주)상인	신용카드	940
20					767,520	1908국민건강	공과금영수증	735-6
					443,300	1908국민연금	공과금영수증	735-6
					418,150	1908고용보험	공과금영수증	735-6
					218,420	1908산재보험	공과금영수증	735-6
					1,649,870	국민김혜성	급여대장	735-6
	주사업	학교지원사업비	인건비	8월 급여	1,699,870	국민권주아	급여대장	735-6
					10,328,207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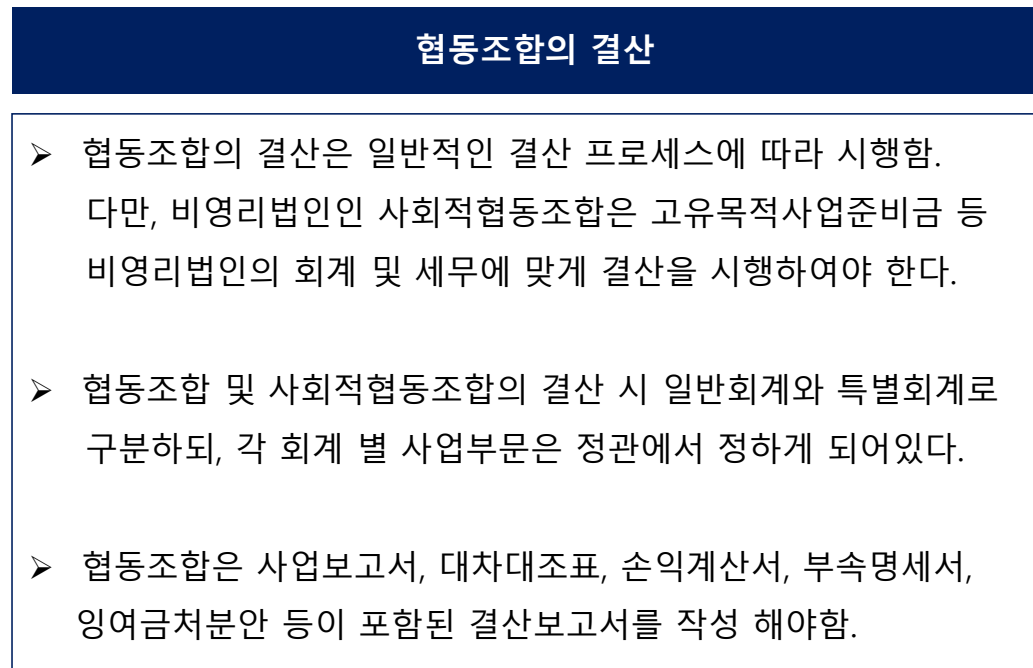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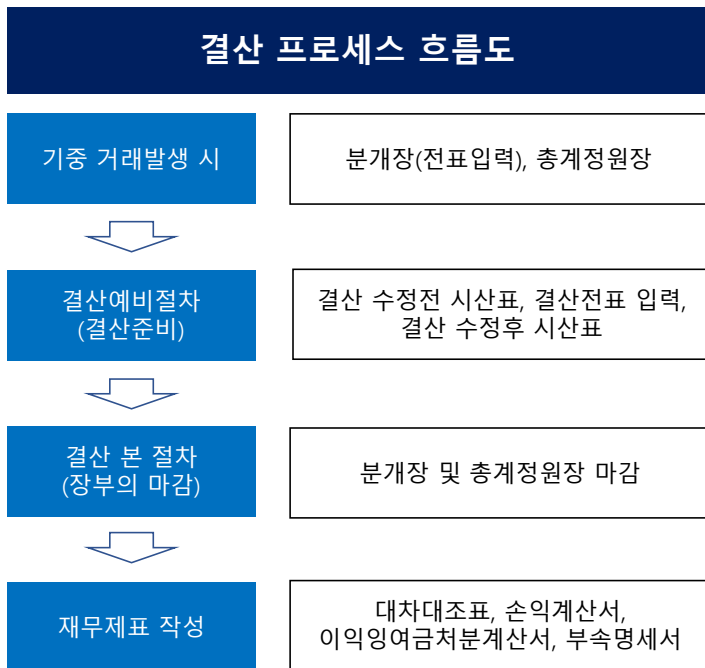
작성방법은 수입내역서와 거의 유사함
 다만, 지출내역은 관련 증빙의 수취가 중요하므로 증빙의 종류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하는 것이 핵심

또한, 지출 증빙의 경우 수입과 달리 종이세금계산서나 종이계산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IV. 협동조합 결산

1. 결산일반

- 결산이란 회계연도말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종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협동조합은 결산을 통하여 회계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결산은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2개월 내에 이루어짐



IV. 협동조합 결산

2. 대차대조표 작성

과목	제7(당기) 금액	제6(전기) 금액
자		
I. 유 동 자 산	2,803,183,234	2,723,990,229
(1) 당 좌 자 산	1,884,800,958	2,052,066,625
현	83,217,616	93,738,113
보 통 예	581,100,004	885,049,657
정 기 예	400,000,000	400,000,000
외 상 매 출	34,087,487	41,458,976
단 기 대 여	0	10,000,000
미 수	561,030,920	534,834,008
자 회 사 자 본	10,000,000	10,000,000
출 자	30,200,000	10,000,000
선 지 금	104,306,127	0
선 금 비 용	78,571,195	65,185,271
선 납 세	1,387,600	1,799,700
(2) 재 고 자 산	918,382,276	671,923,604
상 원 재	709,796,801	367,849,404
식 재 료	106,241,245	177,018,200
식 재	102,344,230	127,056,000
II. 비 유 동 자 산	724,421,743	745,858,987
(1) 투 자 자 산	15,781,547	26,918,984
장 기 금 용	4,442,311	24,940,000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11,339,236	1,978,984
(2) 유 형 자 산	700,330,196	718,630,003
토 지	453,185,500	453,185,500
건 물	260,023,410	260,023,41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8,475,739	25,474,569
국 고 보 조 금 (건 물)	20,134,977	23,301,597
기 계 장 치	1,142,520,000	1,142,52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46,228,501	471,442,919
국 고 보 조 금(기계장치)	493,498,964	665,990,497
차 량 운 반 구	109,586,921	109,586,921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83,486,373	166,292,610
국 고 보 조 금 (차 량)	12,689,301	24,177,258
비 품	472,557,524	429,740,071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71,300,644	301,134,092
국 고 보 조 금 (비 품)	68,148,252	101,091,567
시 설 장 치	49,891,252	49,891,252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3,471,660	37,412,042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8,310,000	310,000

과목	제7(당기) 금액	제6(전기) 금액
기 타 보 조 금	8,310,000	310,000
자 산 총 계	3,527,604,977	3,469,849,216
부 채		
I. 유 동 부 채	2,298,997,971	2,149,042,221
외 상 매 입	1,350,598,103	1,284,719,445
미 지 급	47,020,868	40,248,575
예 수	664,733,619	411,041,129
부 가 세 예 수	17,802,257	22,363,546
선 수	26,387,976	160,454,367
미 지 급 비 용	186,935,148	224,135,159
상 품 권	4,320,000	4,880,000
식 사 권	1,200,000	1,200,000
II. 비 유 동 부 채	0	0
퇴 직 연 금 총 당 부 채	255,258,289	104,096,313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255,258,289	104,096,313
부 채 총 계	2,298,997,971	2,149,042,221
자 본		
I. 자 본 자 금	1,563,200,100	1,533,450,050
출 자	1,563,200,100	1,533,450,050
II. 자 본 잉 여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0
V. 결 손 비 금	334,593,094	212,643,055
이 익 존 비 금	3,506,597	3,506,597
미 처 리 결 손 금	338,099,691	216,149,652
(당 기 순 손 실)		
당기 : 121,950,039 원		
전기 : -16,396,906 원		
자 본 총 계	1,228,607,006	1,320,806,99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527,604,977	3,469,849,216

- ◆ 자산=부채+자본
- ◆ 당기순손실 전기 -16,396,906
→ 전기 순이익 16,396,906원을 의미함
- ◆ 미처리결손금=
전기 미처리결손금+당기순이익 or 당기순손실
(216,149,652+ 121,950,039=338,099,691)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IV. 협동조합 결산

3. 손익계산서 작성(1)

손익계산서					
제 7(당)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6(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협동조합(단위과세)		(단위 : 원)			
과목	제 7(당)기		제 6(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31,155,901,194		30,028,767,373	
상품매출	29,650,476,784		28,770,021,021		
매출할인	101,081,582		73,536,716		
제품매출	244,663,563		263,768,456		
상품매출(식당)	1,324,660,612		1,068,513,712		
홍역매출	28,181,817		0		
II. 매출원가		27,115,753,829		26,312,943,722	
상품매출원가		26,100,079,571		25,519,513,536	
기초상품재고액	367,840,404		245,568,424		
당기상품매입액	26,442,026,968		25,641,774,516		
기말상품재고액	700,706,801		367,840,404		
음식점매출원가		696,681,777		602,180,924	
기초식재료재고액	127,056,000		0		
당기식재료매입액	673,970,007		720,236,924		
기말식재료재고액	102,344,230		127,056,000		
제품매출원가		316,992,481		191,249,262	
기초제품재고액	0		0		
당기제품제조원가	316,992,481		191,249,262		
기말제품재고액	0		0		
III. 매출총이익		4,040,147,365		3,715,823,651	
IV. 판매비와관리비		4,377,021,202		4,123,662,237	
직원급여	2,074,412,030		2,054,224,641		
상여금	0		35,220,000		
잡금	96,750,433		47,116,980		
퇴직급여	200,336,217		158,754,300		
복리후생비	166,903,047		136,840,571		
여비교통비	2,620,800		2,656,654		
접대비	0		7,500		
통신비	30,384,315		36,780,266		
수도광열비	130,688,880		105,908,030		
전력비	155,946,734		147,526,481		
세금과공과금	87,714,620		87,532,927		
감가상각비	61,117,260		62,834,674		
지급임차료	136,253,660		87,384,748		
수선비	37,214,407		28,323,836		

과목	제 7(당)기		제 6(전)기		
	금	액	금	액	
보합료	82,191,606		70,230,192		
차량유지비	48,489,952		30,307,476		
운반비	7,616,150		5,721,442		
교육훈련비	21,806,703		3,300,955		
도서인쇄비	6,034,201		1,904,366		
사무용품비	0		1,454,255		
소모품비	231,874,606		240,770,025		
소급수수료	751,976,100		709,629,505		
광고선전비	18,207,900		57,875,782		
판매촉진비	0		319,400		
건물관리비	0		1,519,004		
잡비	7,400		532,500		
안심농자재사업비	10,374,911		8,876,698		
V. 영업손실		336,873,837		407,838,646	
VI. 영업외수익		824,640,111		1,457,211,178	
이자수익	10,080,574		10,437,678		
수입임대료	6,460,000		3,926,364		
수입수수료	10,000,000		0		
능가보진이익	56,317,000		56,054,000		
보험차익	0		2,430,371		
체험투여수입	3,167,272		25,514,000		
일자리안정자금수입	10,808,810		0		
종자공수입	2,521,400		3,740,000		
국고보조금	656,788,650		1,346,954,317		
잡이익	50,417,396		8,154,358		
VII. 영업외비용		609,716,313		1,032,976,696	
이자비용	0		77,340		
기부금	1,800,000		6,3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74,002		0		
전기오류수정손실	22,809,323		0		
소이푸드사업비	346,823,661		879,941,438		
행복버스사업비	37,130,907		34,546,207		
팜투어사업비	2,678,181		0		
일자리안정자금차감	2,100,000		0		
체험재료비	479,000		20,667,651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IV. 협동조합 결산

3. 손익계산서 작성(2)

과 목	제7 (당)기		제6 (전)기	
	금	액	금	액
국 고 보 조 금 집 행	195,130,261		90,706,189	
잡 손 실	599,988		736,801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손 실		121,950,039		-16,396,906
IX. 법 인 세 등		0		0
X. 당 기 순 손 실		121,950,039		-16,396,906

-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수익 또는 영업손실
- ◆ 영업손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차감전손익
- ◆ 법인세차감전손익-법인세등 = 당기순손익

IV. 협동조합 결산

4. 법정적립금(1)

상법	협동조합기본법
<p>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p> <p>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기업에 비해 법정적립금 적립 의무를 강하게 두고 있음

IV. 협동조합 결산

4. 법정적립금(2)

1. 법정적립금의 적립은 **자본 내의 개념상 이동**일뿐, 실제 현금을 적립하는 개념이 아님
2. (현금배당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잉여금은 누적되는 구조**임.
3. 적립금의 적립은 잉여금의 일부를 처분하지 않고 미래사업 등을 위해 재분류하는 개념

[법정적립금의 적립분개]

(차변) 이익잉여금 XXX 자본의 감소▽ / (대변) 법정적립금 XXX 자본의 증가△



<자주 반복되는 질의사항>

- 법정적립금 통장은 따로 만들어서 돈을 넣어 놓아야 하나요?
- 법정적립금을 적립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주관부처에서 법정적립금 적립통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데 맞는 말인가요?

: 모두 NO.

법정적립금의 적립은 **잉여금의 일부를 개념상 다른 이름을 붙여 적립(재분류)**하는 것임

IV. 협동조합 결산

4. 법정적립금(3)

기본법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에도 잉여금이 남아있을 경우 배당이 가능함.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구성원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님

IV. 협동조합 결산

4. 법정적립금(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 201*년 03월 01일부터 201*년 03월 01일부터
 201*년 02월 28일까지 201*년 02월 28일까지
 처분예정일: 201*년 월 일 처분확정일: 201*년 월 일

법인명: 000(사회적)협동조합

(단위:원)

과목	당기		전기	
	금액		금액	
I. 미처분이익잉여금		16,449,813		12,256,083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629,283		10,632,103	
2.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3. 전기오류수정손실	0		(7,132,020)	
4. 당기순이익	6,820,530		8,756,000	
II. 임의적립금이입액		0		0
1.	0		0	
합계		16,449,813		12,256,083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2,046,159		2,626,800
1. 법정적립금	2,046,159		2,626,800	
2. 000적립금	0		0	
3. 배당금				
가. 현금배당금	0		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403,654		9,629,28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1. 미처분이익잉여금

- (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2) 당기순이익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합 계

3. 이익잉여금처분액

- (1) 법정적립금
- (2) 임의적립금
- (3) 배당금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전

처분후

(유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회계연도에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IV. 협동조합 결산

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1)

(사례1)

출자금 1000만원으로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첫해에 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경우

1기 재무상태표 中 자본	1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2기 재무상태표 中 자본
출자금 10,000,000	1.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0 (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2) 당기순이익 5,000,000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합 계 5,000,000 3. 이익잉여금처분액	출자금 10,000,000
잉여금 5,000,000 (당기순이익 5,000,000)	(1) 법정적립금 1,500,000 (2) 임의적립금 - (3) 배당금 -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500,000	법정적립금 1,500,000 잉여금 3,500,000

법정적립금을 적립해도, 자본총계는 그대로임

IV. 협동조합 결산

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2)

(사례2) 1기에 손실이 발생하고 다음해에 이익이 난 경우
 : 1기 말 500만원 손실, 2기에는 800만원 당기순이익 발생한 경우

2기 재무상태표 末 자본	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3기 재무상태표 中 자본
출자금 10,000,000	1.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000,000 (1)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 △5,000,000 (2) 당기순이익 8,000,000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합 계 3,000,000 3. 이익잉여금처분액	출자금 10,000,000
잉여금 3,000,000 (당기순이익 8,000,000)	(1) 법정적립금 900,000 (2) 임의적립금 - (3) 배당금 -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100,000	법정적립금 900,000 잉여금 2,100,000

1기말 손실 500만원을 보전하고 남은
 잉여금의 300만원에 대해 적립

IV. 협동조합 결산

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3)

(사례3) 1기에 이익이 발생하고 다음해에 손실이 난 경우
: 1기 말 500만원 이익, 2기에는 300만원 손실 발생

2기 재무상태표 末 자본	2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3기 재무상태표 中 자본
출자금 10,000,000	1.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0 (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3,500,000 (2) 당기순손실 △3,000,000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합 계 500,000 3. 이익잉여금처분액	출자금 10,000,000
법정적립금 1,500,000	(1) 법정적립금 150,000 (2) 임의적립금 - (3) 배당금 -	법정적립금 1,650,000
잉여금 500,000 (당기순손실 △3,000,000)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50,000	잉여금 350,000

1기에 발생한 잉여금 500만원 중 150만원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남은 350만원의 이익잉여금을 2기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 당기순손실이 발생해도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남아있는 경우 법정적립금 적립

IV. 협동조합 결산

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4)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경우

1.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미처리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2. 전기에 순이익이 발생했으나 당기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 당기순이익은 통장 잔고(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없어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미적립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회계연도 : 2017년도			
조직	조합명(연합회명)	설립연월일	출자금
조직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2013년 5월 29일	11,300,000원
개요	조합원 수	생산자(30) 소비자() 직원(1) 자원봉사자() 후원자(5) 합계(36) 명	
	주 사업 유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① 대차대조표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원)	구 분	금 액(원)
자산		부채	
I. 유동자산	40,459,953	I. 유동부채	15,965,248
(1) 당좌자산	40,459,953	- 예수금	903,250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64,755	- 미지급금	2,877,000
- 보통예금	13,525,198	- 미지급비용	2,942,828
- 미수금	26,470,000	- 선수금	361,570
- 선급금	0	- 가수금	2,600
- 선급비용	0	- 퇴직급여충당금	8,878,000
(2) 재고자산	0	II. 비유동부채	0
- 제품	0	- 장기차입금	0
- 원재료	0	- 퇴직급여충당부채	0
II. 비유동자산	20,110,000	부 채 총 계	15,965,248
(1) 투자자산	20,110,000	자본	
- 관계회사 출자금	20,110,000	I. 자본금	11,300,000
(2) 유형자산	0	- 조합원출자금	11,300,000
- 비품	0	II. 자본잉여금	0
- 시설장치	0	III. 자본조정	0
- 차량운반구	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3) 무형자산	0	V. 이익잉여금	33,304,705
- 특허권	0	- 법정적립금	11,098,725
(4) 기타비유동자산	0	- 임의적립금	20,559,500
- 임차보증금	0	- 미처리잉여금	746,480
		- 전기요류수정손실	900,000
		(당기순손익)	
		당기 : 1,746,480 원	
		전기 : -8,800,000 원	
		자 본 총 계	44,604,705
자 산 총 계	60,569,95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0,569,953

* 누적된 법정적립금은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 항목에 기재

IV. 협동조합 결산

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5)

Case 1.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미처리결손금 존재

전기 당기순손실: -16,396,906원

→ 전기의 당기순이익 16,396,906원 발생

전기 미처리결손금: 216,149,652원

→ 전기의 당기순이익인 16,396,906원을 더한 후에도 216,149,652원의 결손금이 남은 상태

→ 즉, 그 이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누적 손실금이 232,546,558원으로, 전기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나 당기에 법정적립금이 적립돼 있을 수 없음

과 목	제7(당기)		제6(전기)	
	금 액		금 액	
기 타 보 증 금		8,310,000		310,000
자 산 총 계		3,527,604,977		3,469,849,216
부 채				
I. 유 동 부 채		2,298,997,971		2,149,042,221
외 상 매 입 금		1,350,598,103		1,284,719,445
미 지 급 금		47,020,888		40,248,575
예 수 금		664,733,619		411,041,129
부 가 세 예 수 금		17,802,257		22,363,546
선 수 금		26,387,976		160,454,367
미 지 급 비 용		186,935,148		224,135,159
상 품 권		4,320,000		4,880,000
식 사 권		1,200,000		1,200,000
II. 비 유 동 부 채		0		0
퇴 직 연 금 총 당 부 채	255,258,280		194,996,313	
퇴 직 연 금 유 용 자 산	255,258,280	0	194,996,313	0
부 채 총 계		2,298,997,971		2,149,042,221
자 본				
I. 자 본 금		1,563,200,100		1,533,450,050
출 자 금		1,563,200,100		1,533,450,050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0
V. 결 손 금		334,593,094		212,643,055
이 익 준 비 금		3,506,597		3,506,597
미 처 리 결 손 금		338,099,691		216,149,652
(당 기 순 손 실)				
당기 : 121,960,039 원				
전기 : -16,396,906 원				
자 본 총 계		1,228,607,006		1,320,806,99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527,604,977		3,469,849,216

IV. 협동조합 결산

5. 법정적립금 적립사례(6)

Case 2. 손실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전기 미처리결손금이 없었더라도, 당기에 발생한 순손실이 적립금 합계보다 크다면 손실을 보전하는데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게 되므로 당기에 남아있는 적립금이 없게 됨

→ 이 경우 이익잉여금 항목에 적립금 관련 항목이 기재되지 않으며,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의 금액이 전기의 순이익 금액보다 매우 크게 나타남

과 목	제7(당기)		제6(전기)	
	금 액		금 액	
기 타 보 증 금		8,310,000		310,000
자 산 총 계		3,527,604,977		3,469,849,216
부 채 총 계				
I. 유 동 부 채		2,298,997,971		2,149,042,221
외 상 매 입 금		1,350,598,103		1,284,719,445
미 지 급 금		47,020,868		40,248,575
예 수 금		664,733,619		411,041,129
부 가 세 예 수 금		17,802,257		22,363,546
선 수 금		26,387,976		160,454,367
미 지 급 비 용		186,035,148		224,135,159
상 품 권		4,320,000		4,880,000
식 사 권		1,200,000		1,200,000
II. 비 유 동 부 채		0		0
퇴 직 연 금 총 당 부 채	255,258,280		194,096,313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255,258,280	0	194,096,313	0
부 채 총 계		2,298,997,971		2,149,042,221
자 본 총 계				
I. 자 본 금		1,563,200,100		1,533,450,050
출 자 금		1,563,200,100		1,533,450,050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0
V. 결 이 미 (당 기 순 손 실)		334,593,094		212,643,055
이 익 준 비 금		3,506,597		3,506,597
미 처 리 결 손 금		338,099,691		216,149,652
당기 : 121,950,039 원				
전기 : -16,396,906 원				
자 본 총 계		1,228,607,006		1,320,806,99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527,604,977		3,469,849,216

IV. 협동조합 결산

6. 구분회계 예시

부문별손익안분명세서(전체)

제5기 2018년 01월 - 2018년 12월

회사상호:

사회적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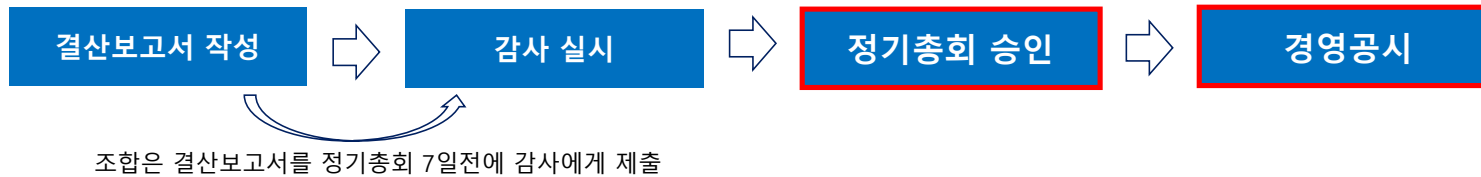
계정과목	합계					나눔-8호기(1800)
I. 매출액	321,960,680	2,282,969	246,738,639	13,044,098	42,628,732	18,366,362
기타매출	321,960,680	2,282,969	246,738,639	13,044,098	42,628,732	18,366,362
II. 매출원가						
III. 매출종이익	321,960,680	2,282,969	246,738,639	13,044,098	42,628,732	18,366,362
IV. 판매비와관리비	206,677,256	4,972,966	33,083,176	36,906,849	112,109,116	19,417,650
직원급여	26,640,000	189,144	20,334,312	1,078,920	3,519,144	1,618,480
상여금	4,440,000	31,624	3,389,052	179,820	686,624	253,080
복리후생비	2,682,940			2,682,940		
여비교통비	293,800			293,800		
통신비	2,279,128		1,426,672	683,454	270,000	
전력비	469,740	63,497	204,386	6,661	79,827	116,480
세금과공과금	1,738,180	67,600	406,000	1,198,180	67,600	
감가상각비	141,233,646			16,837,616	104,873,620	17,622,610
지급일차료	482,050			482,050		
보험료	361,040			361,040		
도서인쇄비	152,000			152,000		
사무용품비	69,500			69,500		
소모품비	1,690,700			1,690,700		
지급수수료	14,667,323		7,324,766	4,324,368	2,712,600	8,000
광고선전비	40,000					
건물관리비	1,536,010			1,536,010		
사회공헌활동비	8,121,301	4,621,301		3,600,000		
V. 영업이익	115,283,424	-2,690,007	212,655,363	-23,862,761	-69,680,383	-1,061,198
VI. 영업외수익	226,684,174	6,226	1,296,049	18,224,909	1,212,261	666,678
이자수익	861,967	6,167	139,201	66,699	34,307	666,641
기부금	16,134,400			16,134,400		
국고보조금수익	200,000,000					
잡이익	8,587,787	68	1,166,848	2,033,810	1,177,944	37
VII. 영업외비용	243,766,622	46,468	1,338,946	3,369,849	47,300,864	1,126,026
이자비용	60,404,712		84,239	3,019,623	47,300,864	
국고보조금지출	190,667,420					
잡손실	2,804,390	46,468	1,264,707	340,226	4	1,126,026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97,101,076	-2,731,260	212,612,466	-8,997,691	-116,668,986	-1,610,646
IX. 법인세	6,366,870		6,366,600	1,016,370		
법인세등	6,366,870		6,366,600	1,016,370		
순익	90,734,206	-2,731,260	207,261,966	-10,014,061	-116,668,986	-1,610,646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IV. 협동조합 결산

7. 결산보고

- 협동조합은 매 결산기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라 협동조합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고,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함.



경영공시

- ▶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함.

세무신고

- ▶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협동조합은 결산서를 토대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함

일정규모 이상*: 조합원 수 200명 이상 또는 자기자본 30억 이상인 경우

V. 협동조합 세무

1. 법인세(1)

- 법인세는 법인사업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소득'은 법인의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차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 일반

- 사업연도는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기간입니다. 과세기간은 법인 정관 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넘지 못합니다.
- 신고납부일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 법인세 계산

회계상 결산	세무조정		법인세법
수익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익금 총액
(-)			(-)
비용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 총액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

V. 협동조합 세무

1. 법인세(2)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의무 발생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세

-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유지를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사업소득(수익사업)이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신고서식으로 신고
이자소득만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 신고 특례에 따른 간이신고서식으로 신고

비영리법인 간이신고서식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 원천납부세액명세서(동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갑)(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동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갑)(을))

V. 협동조합 세무

1. 법인세(3)

구분경리된 손익계산서(예시)

과 목	제 23 (달)기		
	총합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I. 사업수익	300,797,597	282,822,597	17,975,000
연회비	7,480,000	7,480,000	0
특별회비	68,810,000	68,810,000	0
회비	160,050,597	160,050,597	0
작가지광고료	17,975,000		17,975,000
작가지구독료	602,000	602,000	0
고교생백일장회비	4,880,000	4,880,000	0
특별추원금	41,000,000	41,000,000	0
II. 사업비용	182,051,513	182,051,513	0
1. 사업수행비용	40,107,433	40,107,433	
고교생백일장비	7,293,634	7,293,634	
내일을어는작가비	23,818,819	23,818,819	
기타사업비	2,193,480	2,193,480	
대외연대비	6,801,500	6,801,500	
2. 일반관리비용	141,944,080	141,944,080	
직원급여	105,037,440	105,037,440	
활동비용	16,805,000	16,805,000	0
보험료	11,753,490	11,753,490	0
복리추생비	2,706,990	2,706,990	0
도서인쇄비	337,000	337,000	0
업무추진비	3,769,400	3,769,400	0
일만수용비	1,534,760	1,534,760	0
III. 사업이익	118,746,084	100,771,084	17,975,000
IV. 사업외수익	8,540,602	8,540,602	
이자수익	5,178,792	5,178,792	
잡이익	3,361,810	3,361,810	
V. 사업외비용	1,770,410	1,770,410	
이자비용	1,770,410	1,770,410	
VI. 법인세차감전이익	125,516,276	107,541,276	17,975,000
IX. 법인세비용		0	
X. 당기순이익	125,516,276	107,541,276	17,975,000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

V. 협동조합 세무

1. 법인세(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으로 청산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비영리내국법인이 설정 가능_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지출목적으로 수익사업 회계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가능

설정 한도

-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상 한도

- 100%한도 적용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단,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50% 적용
- 50%한도 적용 그 밖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설정 방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해당 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인정

V. 협동조합 세무

2. 부가가치세(1)

- 협동조합(영리) 및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은 주요 사업대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①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②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에게 모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 1 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확정신고	4.1 ~ 6.30	7.1 ~ 7.25
제 2 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확정신고	10.1 ~ 12.31	다음해 1.1 ~ 1.25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와 고유사업만 영위하는 비사업자의 제출의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비영리법인(고유사업만을 영위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1기 확정 : 7월 25일, 2기 확정 : 다음해 1월 25일)

V. 협동조합 세무

2. 부가가치세(2)

-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유번호증의 사업자등록증 전환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V. 협동조합 세무

3. 원천세(1)

-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협동조합은 직원을 두는 경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어떤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인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란 통상적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명칭이나 방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타 법인에서 받은 급여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연말정산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의 징수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납부합니다.
또한, 다음해 2월분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 실시합니다.

V. 협동조합 세무

3. 원천세(2)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란 특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 사업소득의 징수

소득세는 지급금액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기타소득

-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타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고는 소득으로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 기타소득의 징수

소득세 : (지급금액 - 필요경비) * 20%

- 강사료, 강연료, 문제출제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등은 총수입금액의 60% 공제 후 기타소득 20% 징수
- 필요경비가 80%, 90%인 기타소득 항목도 있음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3월 이상 계속 고용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징수

- 징수대상 : 일당 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는 자
- 징수방법 :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를 징수하되 그 징수금액의 55%는 세액공제 적용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7% 징수.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원천징수)

V. 협동조합 세무

3. 원천세(4)

소득구분 유형

구분	소득종류	소득구분
강사비	근로소득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고문료	근로소득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V. 협동조합 세무

3. 원천세(5)

원천세액 신고 및 납부

- 원천원천징수내역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상황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9월 25일 급여지급시 10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소득 구분	제출 기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그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자, 배당, 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고, 얼마를 원천징수 납부했는지에 대한 명세서

V. 협동조합 세무

3. 원천세(6)

소득세 원천징수 요약

구분	대상	세율(소득세+주민세)	근거
근로소득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매월 간이세액표 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특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	지급금액 * 3.3%	소득세법 제19조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타 기타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	(지급금액-필요경비) * 22%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일용근로자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지급금액-15만원) * 6.6%	소득세법 제47조 및 제129조

VI. 자주하는 질문

1. 결산보고서 작성(1)

1 대차대조표 자본_출자금

- 매 결산 기말 기준 출자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 재무상태표상 출자금은 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좌잔액을 의미하지 않음. 따라서 출자금을 사용하고 남은 계좌잔액이 아닙니다. 즉, (현재 조합원이 출자한 전체 출좌자수 X 1좌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오류 사항

- 설립인가 당시 출자금을 기재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인통장잔액을 출자금으로 입력하는 경우
- 출자금과 함께 조합비를 자본금 계정으로 처리
- 출연금을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 출자금을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수익으로 중복 처리하는 경우

VI. 자주하는 질문

1. 결산보고서 작성(2)

2 대차대조표 자본_법정적립금

- 법정적립금은 자본항목의 **V. 이익잉여금 하부 계정과목**을 표시합니다.
- 법정적립금은 출자금의 3배까지 적립합니다. 필요에 따라 그 이상 적립할 시 임의적립금 등의 항목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오류 사항

- 세무대리인의 법정적립금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임의적립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표시**
- 법정적립금을 출자금의 3배까지 적립하지 않고 기타적립금으로 적립 또는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고 임의적립금 등 기타적립금으로 표시
- 법정적립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적립**하는 사례_ 발생한 잉여금을 협동조합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적립금으로 유보하라는 의미일 뿐, 이를 **통장에 따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음**

VI. 자주하는 질문

1. 결산보고서 작성(3)

3 대차대조표 자본_이익잉여금,자본총계

오류 사항

이익잉여금 총계

- 하부 예시 항목에 '미처리결손금'은 있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당기순익이 발생해도 기입하지 않거나, 다른 계정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음
- (이월결손금) 계정이 있어 이는 결산서양식오류로 (미처리결손금)의 금액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입력하는 경우도 있음
- 당기순손익의 당기/전기 금액 오류 및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수임
- 당기와 전기 중 한번은 순이익이 한번은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호의 오류발생

자본 총계

- 자본총계의 개념, 자본총계를 계산하는 법을 몰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VI. 자주하는 질문

1. 결산보고서 작성(4)

4 손익계산서 계정

오류 사항

- **보조금 수입 처리 문제** : 협동조합의 주 사업임에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사업수익(매출) 0원에 영업손실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기형적인 재무제표가 만들어짐(여기서 보조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용역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보조금을 의미함)
- **조합비/회비 처리**: 조합비 혹은 회비를 기본 운영비로 하는 경우 조합비나 회비를 사업수익(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고 있음.
* 주사업 운영비 성격이 아닌 조합비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입력의 오류** : 손실의 경우 금액 앞에 (-)를 입력하거나 계정을 (손실)로 바꿔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

《교육내용 관련 문의(Q&A)》

- 협동조합 사이트 상시상담 게시판
- 한길회계법인 E-MAIL 문의 : hangil1903@daum.net



**Hangil
Accounting
Corporation**
한길회계법인